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 본 시설의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입소대상자 자격기준〉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입소대상자 선정기준〉

②장기요양 1~2등급(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자

③장기요양 3~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1.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④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 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1.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⑤치매전담실(가형)의 입소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인정자 중 치매전담실 입소가 가능하다고 판정 받은 자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29인으로 한다. (일반실 13인, 치매전담실 가형 16인)

②입소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추천을 통한 모집
2.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온라인카페) 문의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온라인카페) 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은 입소자와 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목적〉

②계약목적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설을 이용 하는 입소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서류〉

③입소계약(서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시설급여)’에 따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 입소·서비스이용 전반 관련 동의서
3. 수급자 권리 동의서
4. 신체 제재 동의서 (필요시)
5.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④입소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사본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계약기간〉

⑤계약기간은 ‘입소자 또는 대리인(보호자)’가 입소를 희망하는 기간 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특별히 계약 종료 일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으로 정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여부 확인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계약해지 요건〉

⑥‘입소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 할 수 있다.

⑦‘제공자·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자 또는 대리인(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 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시설급여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장기요양인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보호자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4.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입소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입소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계약의 해지〉

⑧‘입소자 또는 대리인(보호자)’는 제6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15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⑨‘제공자·기관’은 제7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입소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⑩‘입소자 또는 대리인(보호자)’는 제6항 및 제7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소시설 내 ‘입소

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공자·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입소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월 이용료〉

⑪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수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⑫이용료의 본인부담비율은 장기요양수가 급여비용에 한해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공단이 정하는 감액 비율에 따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⑬이용료의 비급여 항목 및 산정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대상자 자격기준에 구분 없이 실제 제공 한 내역에 따라 비용 전액을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생계급여대상자는 제외)

1. 식사재료비 : 1회 제공 시 2,000원 (1일 3회 제공)

2. 간식비 : 1회 제공 시 500원 (1일 2회 제공)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⑭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발생하는 개인 외래진료비, 외부 이동 교통비 등 개인지출비용은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⑮그 밖의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규정에 없는 비용 발생 시 당사자간의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

〈이용료 납부방법〉

⑯이용료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다.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해당 월의 입소비를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한 별도 서면발급 요청이 없으면 문자, 메신지 등의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이용료 납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 된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요청이 있으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고시(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 된 경우 변경 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전까지 '입소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통지하고 모든 입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변경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한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

④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은 입소자의 등급 변경 시, 요양급여수가의 기준 변경 시,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시 발생할 수 있으며, '입소자 또는 대리인(보호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①본 기관은 제5조(이용대상) 제1항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시설급여 서비스의 내용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며 세부 내용은 제4항과 같다.

③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의 장기요양 인정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고려하여 제4항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설급여 서비스 세부내용

〈시설급여 서비스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 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측정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투약관리	경구약 투여 및 도움·확인, 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저 제공, 산소공급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옷갈아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욕실정리	통증간호	온·냉습포 제공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 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찰, 장루간호 등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시 부축 및 동행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등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외출 시 동행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동행(차량이용 포함), 산책 시 부축	시설환경관리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구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침구·린넨관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린넨 교환
기능회복훈련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맨손체조, 타월체조, 세라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관공서 등 방문, 야와 나들이, 영화감상 등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기타 서비스	
기본동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일상생활동작 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 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치매관리 지원	배회·불결행위·폭력행위·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 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의사소통 도움	책임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콜벨 대처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법 등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등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비용의 부담〉

⑤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 「제7조 11항 내지 15항, 제8조, 제10조 2항의 1호, 제10조 3항의 2호」에 따르며,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표준 이용 약관(계약서)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⑥제5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의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에 정한다.

◆(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기관의 의무〉

①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입소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3.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시설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입소자’(또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입소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입소자’의 식사제공, 생활 상담, 생활 편의 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8. 기타 ‘입소자’(또는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입소자의 의무〉

②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③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
4. '입소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및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④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1.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시설물 배상 및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기관'은 기관 내·외부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입소자(이용자)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 된 사항은 본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안내한다.

②'입소자'는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시설물 배상〉

③'입소자'에 의해 기관의 시설물이 파손 또는 멸실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④'입소자 또는 대리인(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기관'이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 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대리인(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⑤'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1.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면책사항〉

⑥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대리인(보호자)'는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반입 제한물품·소지 불가물품 등〉

⑦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